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50
----------	------

2020년 04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서울특별시
- 나. 제 안 일 : 2020년 04월 03일
- 다. 회 부 일 : 2020년 04월 08일
- 라. 상 정 일 :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태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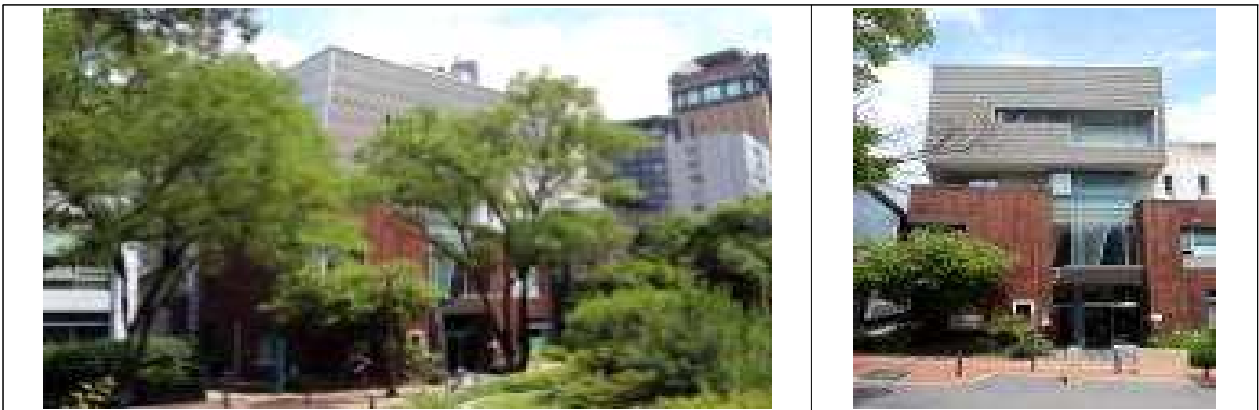
가. 제안이유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시청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여 운영중인 시설로서,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2017.72㎡)
- 인가일 : '95. 3. 6.(2000.3.3.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



2) 운영개요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63명('20. 3월)
- 교직원 : 총 42명
 - 원장, 원감, 교사 32, 간호사, 영양사, 취사원 4, 사무원 등 2명
- 입학자격 : 만0~만5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

3)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3개월('20. 10. 1. ~ '22. 12. 31.)
 - ※ 조례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14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20년 예산 : 1,500백만원(보육료 수입 등 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한솔어린이보육재단)

4)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99.01월~'01.07월(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2차 : '01.08월~'08.10월(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3차 : '08.11월~'11.09월(학교법인 숙명학원)
 - 4차 : '11.10월~'14.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5차 : '14.10월~'17.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6차 : '17.10월~'20.09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5) 민간위탁(재계약) 필요성

- '17.10월부터 현재까지 약2년간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위탁운영중으로, 짧은 위탁기간임에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으로 통과('19.10월)하여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였으며,
- '18.06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19.05~06월 스프링클러 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도 휴원 없이 인근 건물을 활용해 대체보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
- 또한 레지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 중심의 중점보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 바람직한 보육철학 정착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19.12.13.)

○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정' 의결('20.1.29.)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적정' 의결('20.3.1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수탁한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의 민간위탁 기간(2017. 10. 1. ~ 2020. 9. 30.)이 종료되어 1회에 한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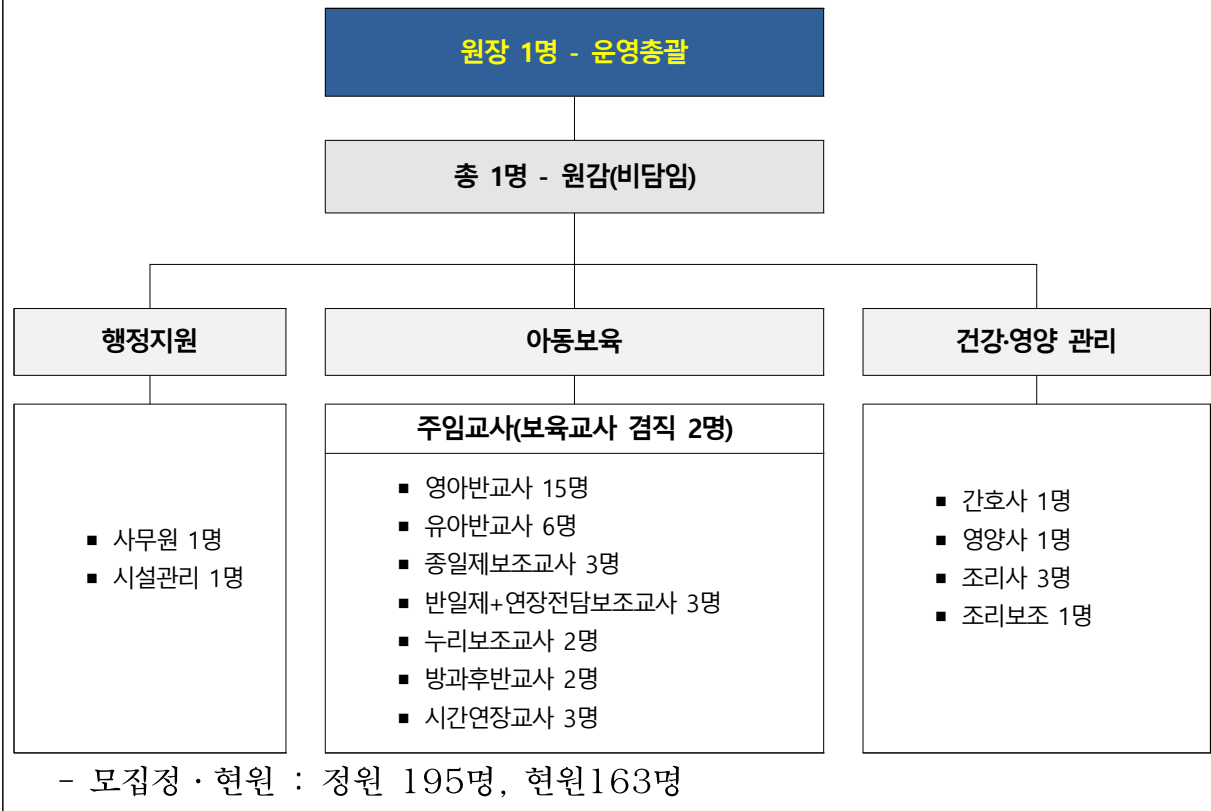
□ 재계약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 수탁기관 : 한솔어린이집 보육재단(대표 : 오문자)
- 위탁기간 : 2년 3개월('20. 10. 1. ~ '22.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한솔어린이보육재단)
-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20년 예산 : 1,500백만원(보육료 수입 등 별도)

- 운영비 부담기준 :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 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서울시청직장 어린이집 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규모 : 지상1층~4층(연면적 2017.72 m^2)
- 지원시설
 - 인가일 : 1995. 3. 6.
 - 현소재지 : 2000. 3. 3.
 - 근무인원 : 41명(원장1명, 교사32명,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시설관리인, 조리사 4명)



나. 동의 시기의 적절성 여부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1995년 인가를 받은 이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서 전환하여 1999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연면적 2017 m^2 규모)해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시행 이후 한번도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2017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 ※ 2017년 개정(2017.7.13)된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동 조례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서울시청어린이집 최초 개원(1995.3.6.) : 시청본관 구 연금매점 2층(48평) 개원 (정원 46명)하여 자체운영 함.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위탁 연혁]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비 고
'99.01~'01.07	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01.08~'08.10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08.11~'11.09	학교법인 숙명학원	
'11.10~'14.09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14.10~'17.09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17.10~'20.09	한솔어린이보육재단	

○ 다만, 시의회에 동의를 받드시 거치도록 한 조례 개정 시행일(2017.7.13.)이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최초 민간위탁계약기간 시작일(2017.10.1.)보다 앞서 개정되어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고로 갈음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 행정국은 동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미동의에 대해 당시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리업무는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에서 소관하였으며, 2018년 1월 18일자로 행정국(인력개발과)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당시 미동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음.

< 행정국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미추진 사유 >

차수	기 간	수탁단체	누적기간	동의 미추진 사유
1	2017.10.1.~2020.9.31. (3년)	한솔어린이 보육재단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규정이 신설(2011.12월 개정, 2012. 3월 시행)되기 이전인 2000.3월 민간위탁을 시행하였으며, - 그동안 최초 위탁 이후 조례에 따라 시 의회에 '보고'를 실시해 왔음 ☞ 제274회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의회 보고 (2017.6.16.,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정책실 보육담당관으로부터 2018.1.18. 업무 이관

다. 재계약 적정성 검토

- 수탁기관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은 2006년 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을 하는 한솔교육재단으로 출범하여 2017년 보육사업만을 위한 한솔어린이보육재단으로 분리하여 현재 약 13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재단이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한솔어린이재단 현황			
<input type="checkbox"/> 한솔어린이보육재단현황			
○ 명 칭 : 한솔어린이보육재단			
○ 대 표 자 : 오문자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상암동) 한솔교육빌딩 7층			
○ 재직인원 : 총 38명(이사회 임원 5명, 직원 33명)			
○ 연 혁			
- '06년 한솔교육희망재단 출범, 복지사업 및 보육사업 시작			
- '17. 8월 보육사업 분리(재단 내 보육사업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으로 분리)			
- LG CNS 직장어린이집 위탁을 시작으로 현재 약 139개소 운영 중			
<input type="checkbox"/> 보육실적			
○ '20. 3월 현재 총 139개소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개원 준비 포함)			
<input type="checkbox"/> 재정능력 (19. 12월 현재)			
구분	총자산(A)	총부채(B)	자산(A-B)
금액	604,021,213원	48,419,489원	555,601,724원

- 행정국은 현재 수탁기관(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어린이집 리모델링('18.6) 및 스프링클러 공사('19.5)와 같이 대규모 공사에도 휴원 없이 인근 건물을 활용해 대체 보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였고, 수탁기관의 교육철학(레지오) 정착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계약 배경으로 밝히고 있음.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한 투자·출연기관에서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4조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²⁾)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에서도 A등급 기관평가를 인정받은 바(참고자료), 재계약 추진을 위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짐.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20.3.10) : 적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적격, 80점 미만이면 부적격 의결임.
- 민간위탁 재계약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결과(20.1.31) : 적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행정국의 2018년 지도·점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³⁾에 근거) 결과 보육교사들의 상호작용 평가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시간외 근무수당 명부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부정 수령의 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9년 지도·점검결과에서도 미납보육료 관리 등의 미흡한 사례가 지적된 바,

-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행정국에서는 관리감독에 있어 지도점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시청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청직장어린이집 예산집행 등 운영일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제반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출 결의 오류 및 예산액 대비 초과지출 사례가 있어 즉시 보완토록 안내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및 환경개선 공사('18.6월)로 영유아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일부 실내 청결 미흡사례가 있어 담임교사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 시간외 근무수당 명부의 경우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시간외 근무 부정 수령 등의 문제 발생초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다만, 보육교사들의 상호작용 평가 등 보육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크지 않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7년부터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한도를 상향(10시간→18시간) 하고 보조교사 추가채용(4명) 및 청소용역을 실시('18.6월~)하는 등 보육교사들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나,
- 많은 교사들이 교수-학습방법 및 놀이지원 측면과 교사-영유아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019년 시청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 점검총평 〉

- 운영일반, 예산집행, 교직원 관리 등 항목별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미납보육료 관리 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어 즉시 조치 또는 개선안 마련 후 '20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조치

라. 재계약 기간의 적정성 검토

- 행정국은 재계약 기간을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1.1. ~ 12.31.)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를 위해 회계연도에 계약기간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2014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년 3개월의 기간('20.10.1~'22.12.31)으로 계획하고 있음.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서울시 및 주요 투자·출연기관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어린이집 명칭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위탁계약금액
서울시	서울시청직장 어린이집	한솔어린이보육재단	1997.10.01 ~ 2020.9.30	1,360,000
서울소방 재난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어린이집	한솔어린이보육재단	2020.01.01 ~ 2022.12.31	908,800
서울시립대 어린이집	서울시립대 직장어린이집	한솔어린이보육재단	2018.01.01. ~ 2020.12.31	652,348
서울시인재개발원 어린이집	서울시인재개발원 쭉쭉어린이집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2019.01.01. ~ 2023.12.13.	493,461
서울시설공단	누비어린이집	킨더솔레보육 경영연구소	2019.03.01 ~ 2021.02.28	438,238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올본어린이집	한솔어린이보육재단	2019.03.01 ~ 2024.02.28	684,548
서울주택도시공사	으뜸어린이집	킨더솔레보육 경영연구소	2019.03.01. ~ 2021.02.28	857,556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어린이집	킨더솔레보육 경영연구소	2018.03.01. ~ 2020.02.28	600,627

- 다만, 행정국이 재계약 추진기간으로 명시한 기간은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위탁기간(3년 이내)에는 부합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계약기간 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위탁기간을 5년(1회에 한해 재계약, 이후 신규위탁 공모)으로 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육사업안내(12페이지)에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보육사업안내, 21, 22페이지)을 참조하되,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 보건복지부 담당자 의견 역시, 특성을 고려하되 직장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5년이 맞다는 입장임.

- 아울러,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교 방과후반 운영을 주요 위탁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 특성상 회계연도에 맞추기 보다는 학교 개학시기(3월)에 맞춰 민간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교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마. 정·현원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검토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은 195명이나, 실제 이용하는 현원은 163명으로 결원 발생인원이 32명(16.5%)에 달하고 있는 바, 정·현원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결원 발생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2020년 3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정·현원 및 인적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방과후	시간연장반	소계
법정비율	1:3	1:5	1:7	1:15	1:20	1:20	0(기준 없음)	1:5	-
교실수	3	3	2	2	1	1	1	1	14
정원	18	25	28	30	26	31	37	15	195
현원	12	23	27	26	29	21	25	15	163
반구성	6	5	4	2	2	2	1	3	25
보육교사	4	5	4	2	2	2	2	3	24
보조교사	1	1	2	0	1	0	0	0	5
누리보조	0			1	0	0	0	0	1

※ 시간연장반은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음.

- 행정국은 결원발생에 대해 직장어린이집까지 아이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접근성 문제와 저출산 영향에 따른 이용인원 감소 등을 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 건축당시 직사각형의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공간 발생에 따라 보육정원 보육실 전용면적(1인당 2.64㎡)의 산정 기준이 당초부터 잘못되어 정·현원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원인 분석 등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행정국의 전문가 자문(건축가)에 따르면, 1인당 보육면적 및 교사대 이동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운영 가능한 정원은 약180명이라는 의견이 있는 바, 정원산정시 감안이 필요할 것을 보임.
- 둘째, 결원발생 연령중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만4~5세 반의 결원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수요 여부에 따라 연령별 교실수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와 함께 운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정원(195명) 대비 현원(163명)중 서울시 소속 직원 자녀수가 129명에 불과한 바, 소속 직원 이용 확대 및 결원 해소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용자 중 지역아동자녀가 34명에 이르는 바,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주민을 지원하게 되어 특혜사비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직장어린이집 직원 지역아동자녀 이용 현황 비교] (단위 : 명)

연령	현원	시 직원 자녀	지역아동자녀
계	163	129	34(13)
만0세반	12	6	6(6)
만1세반	23	21	2(0)
만2세반	27	25	2(0)
만3세반	26	19	7(2)
만4세반	29	19	10(5)
만5세반	21	15	6(0)
방과후반	25	24	1(0)

-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으로 규정한 바, 현재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소속 직원 자녀의 비율을 충족(79%)하고 있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위탁보육)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직만을 합산하여 14,034명을 상시근로자 수로 파악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시간제채용공무원 등이 통계에서 누락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와 행정국은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 직원 현황 관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장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근거로써 활용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9년 서울시청 및 사업소 등 직원 현황] (2019.12.31. 기준)

구분	총계(명)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14,034	6	1,073	2,959	4,088	5,569	339
여	5,325	0	574	1,521	1,615	1,441	174
남	8,709	6	499	1,438	2,473	4,128	165

○ 종합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들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이용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 자녀의 육아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지원하는 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지역 주민 자녀 입소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민간위탁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방과후반 지속적 확대 운영 필요,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요청, 어린이집 주차장 이용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 목소리도 있는 바, 행정국의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50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시청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여 운영중인 시설로서,
- 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2017.72㎡)
- 인가일 : '95. 3. 6.(2000.3.3.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



나. 운영개요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63명('20. 3월)
- 교 직 원 : 총 42명
 - 원장, 원감, 교사 32, 간호사, 영양사, 취사원 4, 사무원 등 2명
- 입학자격 : 만0~만5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3개월('20. 10. 1. ~ '22. 12. 31.)
 - ※ 조례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14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20년 예산 : 1,500백만원(보육료 수입 등 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한솔어린이보육재단)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99.01월~'01.07월(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2차 : '01.08월~'08.10월(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3차 : '08.11월~'11.09월(학교법인 숙명학원)
 - 4차 : '11.10월~'14.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5차 : '14.10월~'17.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6차 : '17.10월~'20.09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마. 민간위탁(재계약) 필요성

- '17.10월부터 현재까지 약2년간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위탁운영중으로, 짧은 위탁기간임에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으로 통과('19.10월)하여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였으며,
- '18.06월 어린이집 리모델링, '19.05~06월 스프링클러 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도 휴원 없이 인근 건물을 활용해 대체보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
- 또한 레지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 중심의 중점보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 바람직한 보육철학 정착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19.12.13.)

○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정' 의결('20.1.29.)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적정' 의결('20.3.10.)

※ 작성자 : 인력개발과 후생복지팀 최영하 (☎2133-5771)